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90 제출연월일 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 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,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제16조, 제22조제1항, 제25조제5항"을 "제16조"로, "제35조, 제36조제2항, 제38조,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"을 "제35조제1항·제3항, 제38조 및 제39조를"로 한다.

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감사위원회) ① 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에 따라 위원회에 제1 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새로 감사위원회를 두려는 공사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.
 -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,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 -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중 감사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④ 감사위원회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11조의3(종전의 제11조의2)제2항 전단 중 "감사에게"를 "감사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감사"를 "감사 또는 감사위원회"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사장 및 감사는"을 "사장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" 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"를 "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사장이"를 "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"로 한다.

다만, 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.

제19조 중 "감사"를 "감사(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)"로 한다.

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 "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9조제2항"을 각각 "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"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9조제2항"을 "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공사의 감사(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)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제414조를 준용한다. 이경우 "회사"는 "공사"로, "이사"는 "위원회의 위원"으로 본다.

제39조 중 "자는"을 "사람(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이나 감사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)은"으로 한다. 제40조 중 "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"을 "임직원(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포함한다)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항만 제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공사의 조직 · 운영 등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---- 제<u>16조</u>----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22조제 1항, 제25조제5항, 제31조제6 항, 제34조제1항제2호, 제35조, ----- 제35조제1항·제 제36조제2항, 제38조, 제39조 3항, 제38조 및 제39조를 ----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. <신 설> 제11조의2(감사위원회) ① 위원 회는 공사의 정관에 따라 위원 회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 를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새로 감사위원 회를 두려는 공사에 감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.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(이 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은 3 명 이상으로 구성하고, 감사위 원의 3분의 2 이상은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- 제11조의2(해임요청 등) ① (생 략)
 -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 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(생 략)

제14조(회의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.
- ④·⑤ (생략)

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
-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의 비상임위원 중 감사위 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 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업무와 회계 를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위원 회에 제출한다.

제11조의3(해임요청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사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사위원회에 ---.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-----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14조(회의) ①・② (현행과 같 음)
 - ③ 사장 및 감사 또는 감사위 원은 -----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임원의 임명) ① 공사는 | 제16조(임원의 임명) ① -----

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 내의 임원을 둔다. <u><단서 신</u> 설>

- ② (생략)
-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 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-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<u>사장이</u> 임명한다.
- ⑤ · ⑥ (생 략)
- 제19조(사장의 대표권 제한) 공 저 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 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,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.

제23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 저 허가 등의 의제) ① (생 략)

다만, 제11
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
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
<u>한다.</u>
② (현행과 같음)
3
임명한다.
4
제16조의2에 따른
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
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
⑤·⑥ (현행과 같음)
데19조(사장의 대표권 제한)
<u>감</u>
사(제11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
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
<u>를 말한다)</u>
제23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
허가 등의 의제) ① (현행과
같음)

-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 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<u>「신</u> 항만건설촉진법」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③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 는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9 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등의 고시 또 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.
- ④·⑤ (생 략)
- 제24조(준공확인) ①·② (생략)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인가・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
「신항만
건설 촉진법」 제9조제1항
③
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9
조제1항
④·⑤ (현행과 같음)
]24조(준공확인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제9조
제1항

④ ~ ⑥ (생 략)

여는 「상법」 제414조 및 제41 5조(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

제39조(비밀누설 등의 금지) 위 제39조(비밀누설 등의 금지) ---원회의 위원, 공사의 임직원이 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0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공사의 임직원은 「형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임원의 책임) ① (생 략) 제38조(임원의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

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
 ② 공사의 감사(제11조의2에
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 는 감사위원을 말한다)의 책임 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제414조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회사"는 "공사"로, "이사"는 "위원회의 위원"으로 본다.

----- 사람(제11조의2 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에는 감사위원이나 감사위원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)은 ----

제40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----- 임직원(제11조 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포함한 다)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-----